#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4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어기구·소병훈·복기왕

이정문 · 문진석 · 김종민

박희승 • 박수현 • 이원택

주철현 · 이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 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 법률 제 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제72조제1항"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다른 소득 및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소득 및 재산에 적용할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기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자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아 혅 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 른 보험료 지원) ① ------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 -----같은 법 제71조제2 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부과점수----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 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 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 내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제28조(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 부과점수의 산정에 관한 특례)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 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 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 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u>대통령</u> <u>제1항-----대통령령</u> 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 <u>산</u>에 대해서는 <u>다른 재산</u>과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농어업	열인의	소득
및지	<u> 개산</u>	<u>다</u> .	를 소 <sup>.</sup>	두 및
<u> 재산</u> -				
$\bigcirc$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 소득 및 재산에 적용할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 소득월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재산보험료부과 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